

의안 번호	533
----------	-----

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## 첨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#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5. 11. 24.

전문위원 강영숙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533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11. 12.

라. 회부일자 : 2025. 11. 14.

### 2. 제안이유

-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,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,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성북복지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보통 재산을 출연함

### 3. 주요내용

- 주요사업 (출연금 사업)
  -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현 : 주민복지 아카데미, 행복한 세탁소 운영,  
1인가구 맞춤 멤버십 서비스 구축
  - 지역상생 기부나눔문화 활성화 : 성북복지재단 홍보 서포터즈 (성북U리더스)
  - 지역복지 인프라 개선 : 사회복지종사자 직무 역량강화
- 출연금액 및 내용
  - 출연금액 : 1,574,740천원
  - 출연내용 : 재단 보통재산 지원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 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 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<sup>1)</sup>에 따라 2026년도 성북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.
- 성북복지재단은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,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임.

### □ 출연 근거

- 성북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<sup>2)</sup>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<sup>3)</sup>에서,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출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.

- 
- 1)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 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.
  - 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1조(출연금 등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# □ 출연 규모

- 2026년도 출연금은 총 15억 74백만원으로, 성북복지재단의 보통재산에 인건비·운영비·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, 전년도에 1회성으로 편성되었던 기본재산(감 20억)이 제외됨에 따라 전년 대비 42.51%인 11억 64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음.

### 〈2026년도 출연 예산안〉

(단위: 천 원)

구 분		’ 26년 예산(안)	’ 25년 예산	증감액	증감률(%)	비고
일반 회계	합계	1,574,740	2,739,377	△1,164,637	△42.51	
	소계	1,574,740	739,377	835,363	112.98	
	보통 재산	인건비	787,048	571,780	215,268	37.65
		운영비	629,168	148,097	481,071	324.84
		사업비	158,524	19,500	139,024	712.94
		기본재산	0	2,000,000	2,000,000	△100 설립시1회 출연 (법인설립허가요건)

- 세부내역으로는 성북복지재단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14명의 인건비 7억 87백만원, 운영비 6억 29백만원, 사업비 1억 58백만원으로,
- 특히, 사업비는 주민복지 아카데미 6백만원, 1인가구맞춤 멤버십서비스구축 60백만원, 성북복지재단 서포터즈 성북U리더스 3백만원,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강화 23백만원, 행복한 세탁소 66백만원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편성함.

## □ 종합의견

- 본 출연 동의안은 성북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동의안으로 판단됨.
- 또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는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